



계약학과 운영규정

제정일	2021. 3. 1
개정일	2024. 3.15
개정차수	3차
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학칙 제22조의8 계약학과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설치유형 및 학위과정) 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.

1.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: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,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
2. 재교육형 계약학과 :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

② 계약학과는 전문학사과정, 학사과정을 둘 수 있다.

제 3조 (설치) ① 계약학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계약학과의 명칭,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
2.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
3. 설치·운영기간에 관한 사항
4.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·산업체 등의 부담금(등록금)에 관한 사항
5. 재학 중 퇴직·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
6.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, 그 장소에 관한 사항
7.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
8.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
9.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
10. 기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 4조 (계약학과의 명칭 및 정원) ① 계약학과의 명칭,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학칙 제22조의8에 따른다. (개정 2024. 3.15)

②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당해학년의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 5조 (계약학과 개설인원) ① 계약학과의 개설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문학사과정 : 15명 이상
2. 학사과정 : 10명 이상

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,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 및 단독계약학과 등으로 학사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 6조 (학생의 선발) ①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중소기업청 지원 중소기업 계약학과(재교육형) 학생 우선 선발의 경우 중소기업청 “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” 제16조 4항을 준용하여 선발한다.

③ 고용노동부 지원 일학습병행제 학생 선발의 경우 지원자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, 예비 훈련 결과, 직무성취도 평가 결과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 7조 (학기 및 수업일수) 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로 하며,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.

② 현장교육(S-OJT)교과는 매 학기 개설이 가능하며,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제 8조 (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)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, 계약학과 소 운영위원회 혹은 산업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산업체 등과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.

② 매 학년도 교육과정의 30% 이상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.

③ 수업은 출석수업, 현장실습수업, 원격수업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출석수업의 비중은 50%이상으로 한다.

④ 단,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계약학과에 한하여,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% 범위안에서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수업의 비중을 완화하여 체계적 현장훈련 (S-OJT) 과정 등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.

제 9조 (졸업)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전문학사,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의 졸업 이수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10조 (설치·운영 기간 및 재학생 보호) ① 계약학과의 설치·운영 기간은 계약에 의하되,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.

② 계약학과가 그 설치·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으며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.

③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, 징계해고,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.

④ 산업체 등의 도산, 구조조정,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·계속되는 휴업(휴직)·사업장 이전·회사사정으로 인한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⑤ 제 4항의 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분의 1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

2.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(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)에 취업하는 경우

제11조 (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 등 납부)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하여 정하되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한다.

②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 받아야하며,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수 없다.

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등록금은 산업체 등에서 전액 부담하고, 제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학생신분이 유지되는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전액 학생이 부담한다.

⑤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, 정부가 등록금(훈련비 지원)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2조 (학사제도 적용의 예외) 계약학과는 학칙에서 정한 일반휴학, 전과, 재입학, 부·복수전공, 전체 학습구분변경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3조 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